

#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⑬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 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글 쓰는 순서

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2. 사례(CASE)별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범위  
..... 지난 호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 이번호

###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 ■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대표자에게만 부과됩니까?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대표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

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착공을 먼저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는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일’은 계약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先) 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공 내용과 시공경위, 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내용 등을 행정처분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공사개시일을 통보 의무 기산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40%를 직접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 사람들은 담배를 언제부터 피우기 시작했을까?

담배는 본래 북미대륙의 인디언들이 피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Y자 모양의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인디언들은 이 파이프를 ‘타바코(tabaco)’, 혹은 ‘토바가(tobaga)’ 등

으로 불렀다. 한편 1560년, 프랑스의 장 니코(Jean Nicot)라는 외교관이 프랑스에 담배를 처음으로 들여가면서 담배에 든 끈적 끈적한 성분을 니코틴(nicotine)이라고 부르게 됐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 이상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달하게 직접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과 직접 시공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 3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적용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합니까? 아니면 도급금액으로 적용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의2 규정에 의거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부과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재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1건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및 직접시공 비율(30%) 충족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별로 별도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있는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별로 별도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한 경우라면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지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